

학교법인 상지학원 감사규정

제정 2015. 01. 06.

개정 2022. 02.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29조 제1항 및 정관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및 산하 각급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 제도를 확립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건전한 경영풍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7.)

제2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상시감사,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2.02.17.)

1. 정기감사는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감사는 법인 및 산하기관의 각 부서의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사장의 지시 또는 산하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2.02.17.)

3. 상시감사는 채용·입시·연구윤리·재산관리 등 법인 및 대학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행정업무에 대하여 업무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02.17.)

4. 외부감사는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법인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시감사의 대상 업무,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항 신설 2022.02.17.)

제2장 감사조직

제3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법인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의 실시, 감사결과의 처리,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2.02.17.)

제4조(감사위원회의 기능)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결과의 채택 여부
3.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4.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안건의 검토
5. 감사결과의 공개

(본조신설 2022.02.17.)

제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감사위원 및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의 감사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감사위원으로 한다.

1. 정관 제25조 제6항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되어 선임된 감사
2. 상지대학교 부총장
3. 법인 사무국장
4. 제9조에 따른 감사단장

③ 이사장은 당연직 감사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정관 제35조의3에 따른 구성원 대표단체가 각각 추천한 교원 1명, 직원 1명, 조교 1명, 학생 1명과 총동문회장이 추천한 동문 1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사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2.17.)

제6조(감사위원의 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감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2.17.)

제7조(감사위원회의 결의방법) ①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

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2.02.17.)

제8조(감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2.17.)

제9조(감사단의 설치) ① 감사 실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단을 설치한다. 감사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단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22.02.17.)

제10조(감사단의 업무) 감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실시
3. 감사보고서 작성
4. 감사결과 보고

(본조신설 2022.02.17.)

제3장 감사계획 및 실시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단은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2.17.)

1. 감사의 구분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시기 및 기간
5. 감사인
6. 기타 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02.17.)

제12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 장부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22.02.17.)

③ 실지감사는 감사단이 피감사기관에 출장하여 질문, 입회, 확인, 실사 등을 통하여 조사, 검증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22.02.17.)

제13조(사전조사) 감사위원회는 진정, 민원, 제보 그리고 인지정보 등의 관련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단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7.)

제14조(감사실시 및 통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기관에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2.17.)

제15조(감사인) ① 정기감사, 특별감사, 상시감사의 감사인은 법인감사(정관 제22조의 임원인 감사를 말한다)와 감사단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인으로 임명하여 임시로 감사업

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개정 2022.02.17.)

1.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호 신설 2022.02.17.)
 2. 공인회계사·노무사·변호사 등 감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부전문가 (호 신설 2022.02.17.)
 3. 그 밖에 이사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호 신설 2022.02.17.)
- ② 외부감사의 감사인은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 감사반 또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02.17.)
- ③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정기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의 경우 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 감사책임자는 법인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16조(감사인의 독립원칙) 감사업무를 수행 중인 감사인은 법인의 의결 및 집행 기관 또는 법인의 타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22.02.17.)

제17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22.02.17.)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해야 하며 고의로 피감사기관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을 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있어서 관계법령, 정관 그리고 제규정이나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피감사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조 변경 2022.02.17.)

1. 감사실 및 감사업무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설치요구
2. 장부, 증빙서류, 물품 등 제반 서류의 제출요구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4. 경위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 제출요구
 5. 금고, 창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6. 회계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7. 기타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피감사기관 또는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인의 신분보장) 감사인은 감사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조 변경 2022.02.17.)

제20조(감사인의 대우) 감사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 변경 2022.02.17.)

제21조(피감사기관의 의무) 피감사기관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피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감사기관은 감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02.17.)

제22조(감사참관인제의 운영)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하기관 소속 교원 또는 직원이나 외부인사를 감사 참관인으로 위촉하여 감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2.17.)

제4장 감사결과 보고 및 사후조치

제23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책임자는 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

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02.17.)

②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7.)

1. **감사목적** (개정 2022.02.17.)
2. **피감사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 (개정 2022.02.17.)
3. 감사인
4. **주요 감사사항** (호 신설 2022.02.17.)
5.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02.17.)

④ 매회계연도의 결산감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이사회와 관할청에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4조(긴급보고) 감사책임자는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여 긴급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7.)

제25조(시정요구) ① 이사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7.)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 교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

② 제1항 제3호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제26조(시정결과 보고) ①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25조의**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2.17.)

1.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
2. 조치내용이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
3. 조치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제27조(이의신청) 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2.17.)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위원회에 이의신청 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7.)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안건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변경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02.17.)

1.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호 신설 2022.02.17.)
2.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호 신설 2022.02.17.)
3.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호 신설 2022.02.17.)
4.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호 신설 2022.02.17.)

제28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의 조치 요구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

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2.02.17.)

제29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회는 피감사기관 소속 교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력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2.17.)

제30조(불이익처분 요구)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 등의 불이익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2.17.)

1. 피감사자로서 감사를 거부한 자
2. 감사를 방해한 자
3.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등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4. 보고를 태만하거나 허위 또는 부실 보고를 한 자
5. 감사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자
6. 불성실하게 감사를 받는 자

제31조(세칙) 이 규정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조 변경 2022.02.17.)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2. 17.부터 시행한다.